안녕하세요 캠핑돔즈입니다

지난번 요청해주셨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

- 1. 안녕하십니까?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.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(1AA-2310-0117668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.
- 2. 귀하의 질의 내용은 캠핑카 내부의 가스시설 시공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.
- 3.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- 가.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적용하는 시설기준 등은 「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」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-8호)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나. 주택, 식품접객업 등 대다수의 LPG 사용시설에서 가스소비량이 19,400kcal/h를 초과하는 연소기에 연결된 배관에 퓨즈콕 등의 안전장치 대신 배관용밸브를 설치 가능 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달리, 동 고시의 별표 제1호다목2)에서 가스소비량이 19,400kcal/h 이하인 연소기가 강관·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연결된 배관에도 연소기 각각에 대해 설치하여야 하는 중간밸브를 배관용밸브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는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 트레일러 내부의 연소기 주변에 퓨즈콕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공간이 협소하고, 퓨즈콕 등의 안전장치와 배관 간에 연결부 규격이 일치하지 않아 퓨즈콕 등의 안전장치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.
- 다. 또한, 같은 고시 별표 제1호라목1)에서 저장설비로부터 연소기까지의 배관은 강관이나 동관 뿐만 아니라 제품 성능이 사용압력 등 해당 설치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도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
- 라. 따라서, 질의하신 제품(플렉스 호스)이 외국의 공인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그 성능이 사용압력 등 해당 설치환경에 적합하게 연소기와 연결되었다면, 강관·동관과 같이 배관용밸브를 중간밸브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4. 귀하의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,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김예환 사무관(☎044-203-3986)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.

맨위로